

제 285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5.2.27.)

# 조례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 목 차

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인구교육과 (의원발의)	1
2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정책과 (의원발의)	6
3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략담당관	11
4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전략담당관	16
5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행정과	25
6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관광진흥과	31
7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관광진흥과	35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40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2. 14.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11명)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학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통학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비용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2. 07. ~ 02.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관내 고등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학부담 해소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름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올해 소요예산은 1억 6천 2백만원으로 기존 야간귀가차량만 운행할 때보다 3천 2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됨.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현재,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통학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음

지자체	조 례 명	시 행 연 도
평창군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1.18.
함안군	함안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2023.05.08.
횡성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조례	2023.07.14.
남해군	농어촌학교학생 야간 통학택시비 지원 조례	2021.05.17.

괴산군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2022.12.29.
합천군	합천군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조례	2024.01.04.
인제군	인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23.05.25.
충주시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주민 교통복지 증진 등에 관한 조례	2022.05.06.
곡성군	곡성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19.07.09.
보은군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17.12.26.
옥천군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2023.12.09.
순창군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4.12.13.

##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원거리 통학 고등학생들의 통학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 원거리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대에 맞지 않는 버스 운행 시간과 대중교통 이용 시 완행노선, 통학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피로감 호소, 상시적인 가족차량 이용과 택시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어 왔으며,
  - 거창읍에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원거리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학생, 학습활동, 통학택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 규정으로써 동 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임.

- 안 제4조 이용 대상 규정에 있어서는 관내 재학중인 고등학생으로 정했으며 거주 요건과 대중교통 운행노선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5조는 ‘통학 지원’의 방식에 대해 통학차량 운영비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 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의 체계를 보았을 때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 발취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2025. 2. 14.

나. 발 의 자: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11명)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확보 및 외부 유출 최소화를 통해 거창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다. 간호인력 지원(안 제4조)

라. 예비간호인력 지원 (안 제 5조)

마. 중복지원 제한 및 대장관리 (안 제6조 ~ 제7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보건정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5. 02. 04. ~ 02.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 제14조제1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필요시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유사조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3.2.21.)가 있음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우수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간호사 지역불균형과 지방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 기존 대학의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증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2008년 132개에서 2023년 기준 202개로 간호교육기관이 늘어났으며, 간호학과 입학정원 수는 1만 2천명에서 2만 2천여 명 이상으로 증원되었음.
  - 하지만, 대부분 비수도권 간호사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어 2011년과 2020년 사이 지역 간 간호사의 격차가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또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된 전체 간호학과 졸업생 수는 183,555명인데 반해 10년 사이 증가한 보건의료기관의 전체 간호사 수는 106,691명(58.1%)으로 조사되었음.
  - 10년 동안 총 76,864명(41.9%)의 간호사 인력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탈된 것으로 확인됨.

\* 「간호사 인력의 지역별 분포와 불균형 수준에 대한 실증분석」-간호행정학회지

- 지방 간호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유희 간호사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군이 선도적으로 간호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임.
- 더욱이, 우리군에서는 거창적십자병원을 이전하여 300명상 규모의 ‘복합의료타운’ 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본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호인력’과 ‘예비 간호인력’ 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 및 제1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력 등의 복지향상과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해당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정비한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경남별장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빈집 활용의 용도에 경남별장을 추가함(안 제8조)
- 다. 경남별장 설치, 이용료 등을 신설함(안 제9조, 별표 1, 별표 2)
  - 1) 설치·운영, 위탁
  - 2) 이용료, 면제, 반환 기준, 이용제한
  - 3) 프로그램 체험비 등 지원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 2)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100백만원 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17.~2.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빈집을 활용한 경남별장 설치·운영을 위함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제117조·제156조·제161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경남별장 조성(리모델링)에 10억원, 운영(민간위탁금)에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경남별장을 운영하고 관광객과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임.

▷ 경남별장 시설 현황 ◁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면적(m <sup>2</sup> )
별장1호	한옥주택	남하면 월곡길 1-14	대지 721 / 연면적 69
별장2호	한옥주택	남하면 월곡길 11-12	대지 271 / 연면적 85
별장3호	한옥주택	남하면 월곡길 93-27	대지 453 / 연면적 39
웰컴하우스	커뮤니티공간	남하면 월곡길 81	대지 121 / 연면적 48

- 안 제2조제5호에 ‘경남별장’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1항제4호에 빈집의 활용방안으로 경남별장 등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을 신설하였음.
- 안 제9조를 신설하여 군수가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료와 반환 기준 등을 규정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9조에 따른 경남별장 이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무리가 없어 보임.
-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됨 없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너. 생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0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7. (생략)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별장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시설유형	소재지	면적(m <sup>2</sup> )	주요시설
별장1호	한옥주택	남하면 월곡길 1-14	대지 721 연면적 69	주방1,다목적1,침실1
별장2호	한옥주택	남하면 월곡길 11-12	대지 271 연면적 85	주방1,다목적1,침실1
별장3호	한옥주택	남하면 월곡길 93-27	대지 453 연면적 39	주방1,다목적1,침실2
웰컴 하우스	커뮤니티 공간	남하면 월곡길 81	대지 121 연면적 48	카페, 공유주방, 세탁방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사무 : 경남별장 활성화,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2) 위탁기간 : 조성완료일로부터 2년간
- 3) 위탁예산 : 2년간 2억원(광역기금 1, 군비 1) ※ 제286회 임시회 추경예정

4)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사 선정

5) 선정기준

- 수탁자의 적정성, 마케팅 전문성 및 운영능력(인력, 재정) 등을 고려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평가

6)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위배사항 없음(붙임2 참조)

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1) 경남별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방침 : 2024. 10. 8.

2) 대상지 소유자 협의 및 무상임대계약 체결 : 2024. 11. 30.

3) 대상지 기본도면 용역 완료 : 2024. 12. 22.

4) 경남별장 실시설계 용역 : 2025. 1. ~ 3.

5) 민간위탁비 추경 예산편성 : 2025. 4.

6)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 위원회 : 2025. 6.

7) 위수탁계약 체결 : 2025. 8.

8) 경남별장 조성사업 준공 : 2025. 9.

9) 시범운영 : 2025. 10. ~ 12.

## 4. 참고사항

가. 경남별장 조성사업 민간위탁 운영계획(안): 책자 참조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빈집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경남별장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2025년 2월 14일 제출한 안건임.

- 해당 동의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별장1호~3호(한옥주택)와 웰컴하우스 1개소에 대한 시설관리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2년간, 위탁예산은 연간 1억원 정도로 2년간 2억원임.
- 빈집활용 경남별장 조성사업은 경남도가 정주인구 330만명 회복, 생활인구와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인 '2022~2026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체류주민 확보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작지만 강한 연결체류 관광객 확충으로 인구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임.
- \* 2023. 11월: 광역기금 참여형 사업 선정(4개군: 거창, 의령, 함안, 함양)

< 경남별장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4~2026년(3년간)
- 사업위치: 남하면 월곡길 1-14, 11-12, 93-27, 81
- 총사업비: 3,000백만원(광역기금1,500, 군비1,500)
- \* '24예산: 1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5, 군비5)
- 사업내용
  - 빈집활용 마을호텔 조성(3), 지원공간(1)
  - 지역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소득창출 사업

- 최근 도시민의 4도 3촌, 주말농장 등 농촌 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 빈집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 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해 연간 방문객 12만 명을 불러들이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 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 고스게촌의 150년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마을호텔로 관광객 18만 명을 유치한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음.
- 농촌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일으켜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남별장 조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도입 초기 경남별장의 인지도 제고와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운영 방식 도입을 위해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 수탁자 선정 시 마케팅 전문성과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단체(청년 등)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제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6. 21., 2015. 7. 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 6. 21., 2015. 7. 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전문개정 2009. 4. 24.]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경남별장”이란 활용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생활)으로 신고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남별장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남별장 설치 등)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숙박 제공을 위해 경남별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경남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경남별장 이용료 및 면제 기준은 별표 1,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익목적이나 안전 등을 위해 경남별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경남별장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의 기준,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등을 정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우호 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를 정함(안 제1조~4조)
- 나. 자매결연등 및 기준, 절차를 정함(안 제5조·제6조)
- 다. 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문화관광시설의 감면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라. 해지를 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예산 8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12. 27.~2025. 1. 15.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필요

-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첨부

- 국내외 교류행사, 국제교류도시 연수공무원 초청 등에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매년 국내외 교류 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음.
- 도내 11개 개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운영 중

지자체	조례명	시행연도
양산시	양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2.09.22.
김해시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2.04.08.
함양군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2.12.29.
거제시	거제시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23.10.12.
통영시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2017.04.10.

진주시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04.05.
고성군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22.01.13.
창원시	창원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24.12.20
남해군	남해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22.03.14.
함안군	함안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22.03.07.
하동군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022.02.18.

##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거창군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으로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93조를 근거로 하여 국내·외 도시만이 아닌 해외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으로까지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제명에서 ‘도시와의’를 삭제하고 「거창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함양군, 거제시 등 도내 타 시·군 제명 참조

○ 같은 맥락으로 안 제1조 ‘목적’ 역시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에 대해 입안자의 입법 의도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에

국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범위를 “거창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의 민간기관 및 국제기구 등(이하 “국내외 도시 등”이라 한다)“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덧붙여,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매결연”이라는 용어는 성별 편향적 용어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데다 인권위원회 및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상호협약”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9. 생략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거창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2025. 2.5.제정·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에서 의결할 사항과 거창군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결사항 등) ①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이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등(이하 “협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과테마파크 등의 휴무일 조정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거창군을 찾는 방문객이 거창군 곳곳을 둘러보고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과테마파크 등 시설의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중 관광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공공시설 휴무일 일괄 조정(안 제1조·제2조)
  - 1) 조례 2건
    - 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나)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2) 휴무일 변경: 월요일 ⇒ 수요일

##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합의 완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1. 22.~2. 1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필요

- 주말과 연결되는 주중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기 위함.

□ 상위법규 및 다른 법률과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 시설별 안내판 변경, 휴무일 변경 홍보 현수막 게첨 등에 5백만원 미만 소요 예상

□ 입법 운영상 예상 문제점 : 해당없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사과테마파크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토·일·월 여행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임.

- 2023년 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대체공휴일 지정이 국내관광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1일 증가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31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 ‘2022년 3분기 국민여행조사’에서는 전년도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비여행자 절반(51.6%) 이상이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효과로 휴일이 늘어나면 짧은 국내여행 수요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정책과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등과 같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하는 방안 중 하나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 중이기도 함.
- 관광트렌드가 토·일·월 대체공휴일로 변하는 만큼 공공시설의 휴무일을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항노화힐링랜드, 수송대 출렁다리와 거창박물관은 여전히 ‘월요일’ 휴관인데 관광객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휴일을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차.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하. (생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타. (생략)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더.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제안이유

- 가. 우리군은 2016년 거창항노화힐링특구로 지정되어 항노화산업 육성 및 자연 자원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음.
- 나. 항노화힐링특구 기간 만료 및 항노화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산업의 브랜드 선점을 위해 ‘거창 치유산업특구’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의거 거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안)	비 고
명 칭	거창 항노화힐링특구	거창 치유산업특구	
위 치	가조면 일부리 1300번지 일원 1,210필지	가조면 수월리 산19 일원 433필지	
면 적	4,571,088㎡	2,933,980㎡	감) 1,637,108㎡
운영기간	2016. ~ 2023.	2024. ~ 2026.(3년)	3년 연장
사 업 비	438.15억원	302.55억원	감) 135.6억원
특화사업자	거창군수	거창군수	
특화사업	3개 특화사업 / 11개 세부사업	3개 특화사업 / 8개 세부사업	
규제특례	5개 규제 특례	6개 규제 특례	기존 4, 추가 2, 삭제 1

## 나. 변경사유

- 1) 「거창 향노화힐링특구」기간이 만료('23.12.31.)됨에 따라 특구 기간 연장 필요
- 2)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완성됨에 따라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 농업, 웰니스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향노화라는 테마의 확장성 부족
- 3) 「거창 치유산업특구」 전환을 통해 치유산업 도시 중심지로서의 도약

### 다.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1) 2023. 4. : 중기부 방문 특구 변경방안 사전컨설팅
- 2) 2023. 12. : 치유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특구변경 포함) 착수
- 3) 2025. 1. 15. : 치유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4) 2025. 1. 20. : 특구계획변경(안) 신청서 중기부 검토 요청(사전 컨설팅 절차)
- 5) 2025. 1. 21. ~ 2. 5. : 중기부 및 치유관련 사업 검토결과 반영 특구 내용 수정
- 6) 2025. 2. 5. : 특구계획변경(안) 신청서 중기부 2차 검토 요청
- 7) 2025. 2. ~ : 공고·열람·공청회 등 행정절차 추진
- 8) 2025. 3. : 특구계획변경 신청서 제출(군→중기부)
- 9) 2025. 5. : 특구 심의 및 지정

##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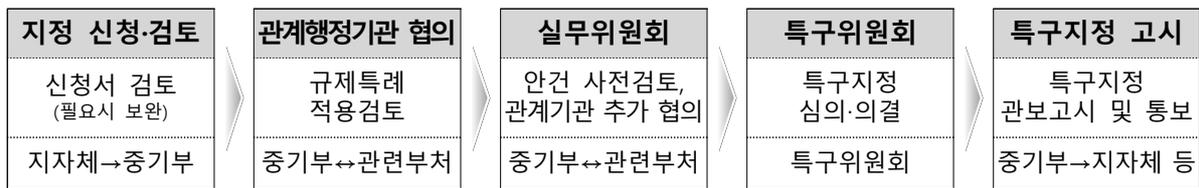
가. 특구 변경개요 및 사업내용 : 책자 참조

## 5. 검토의견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면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였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04. 3. 22. 지역특구법 제정으로 만들어졌음.
-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 후 중기부에 신청하며 부처 협의 및 지역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됨.

<지역특구 지정절차>



- 지정 효과로는 특구 지정을 통해 59개 개별법에서 정한 129개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특구 내 적용 가능함.

< 지역특구 주요 규제특례 현황 >

구 분	적용 특례	구 분	적용 특례
일반 (62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토지 이용 (54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도로통행 제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로점용 허용		지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	이양 (13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완화

○ 우리군에서는 6개 개별법에서 규제특례를 받게 됨.

연번	규제특례	내 용
1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축제·행사 시 차량 통행금지 또는 제한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 홍보를 위해 허가기준을 조례로 제정
3	「농지법」에 관한 특례	특구지역 내 농지위탁 허용, 전용, 조례개정 등
4	「도로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 홍보 관련 일시적 도로점용 허가
5 (신규)	「산림자원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6 (신규)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산림치유관련) 임도설치 등을 위한 특례적용 필요

○ ‘04년 제도 도입 이후, 225개 특구가 신규 지정되었고, 44개 특구가 해제·통합되어, 현재 181개 특구가 지정·운영중이며, 우리군은 3개가 지정되어 있음.

< 지역별 특구현황 >

2023.11월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개)	10	6	5	3	3	1	3	19	14	16	16	13	31	25	14	2	181

< 경남도내 특구현황 >

시·군·구	특 구 명 칭	지정 년도
창녕군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2016년
산청군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2005년
의령군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2005년
함양군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	2005년
<b>거창군</b>	<b>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b>	<b>2013년</b>
	<b>거창 향노화힐링특구</b>	<b>2016년</b>
	<b>거창 승강기밸리산업특구</b>	<b>2019년</b>
하동군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2006년
고성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2007년
거제시	거제 해양휴양특구	2010년
창원시	창원 단감산업특구	2015년
함안군	함안 수박산업특구	2016년
합천군	합천 국보·영상테마체험특구	2017년
진주시	진주 남가람 융복합산업특구	2023년

- 우리군은 2016년부터 거창 향노화힐링특구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기간이 만료되어 “향노화” 보다 폭넓은 개념의 “치유산업특구”로 변경하는 것은 치유산업의 브랜드 선점과 우리군과의 이미지 매칭, 치유산업 중심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변경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운영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으로 되어 있고, 2025년 5월에 특구지정 예정이라면 실제 운영기간은 1년 7개월 정도인데 이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범위에서 계획 내용이 상위계획과 주변의 계획에 맞는지, 토지이용 관련 규제 특례 적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특구 지정 심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 및 검증이 필요해 보임.

## **관련법령 발췌**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5. 2. 14.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25. 2. 14.

## 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①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

#### 1. 제안이유

- 가. 임신 전 건강관리 및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한 양육을 돕는 산후조리원 등 부재로 원정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불편 증가
- 나. 의료복지타운 내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추진

#### 2. 주요내용

##### 가. 개 요

- 1)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62-23번지 일원
- 2) 사 업 명 :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
- 3) 사업기간 : 2025. ~ 2027.
- 4) 사 업 비 : 12,000백만원 \*상세내역 불임참조
- 5) 사업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
  - 부지면적 2,800㎡ / 연면적 2,101㎡ / 지상2층
  - 공공산후조리원 : 모자동실(13), 영유아실, 프로그램실, 마사지실 등
  - 행복맘센터 : 행정실, 프로그램실, 모자보건실 등

## 나. 취득재산 내역

### 1) 개요

(단위:m<sup>2</sup>,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소재지	지목(형식)	연면적			
취득(신축)	건물	거창읍 대평리 1362-23번지 일원	건물 1동	2,101	89,230,000	2027	

### 2) 주요시설

층별	용도	주요시설 설치계획	운영주체
지상1층 (356m <sup>2</sup> )	행복맘센터	행정실, 프로그램실, 문서고, 모자보건실 등	거창군 (직영)
지상1층 (457.68m <sup>2</sup> )	공공산후조리원	행정실, 세탁실, 다용도실, 상담실, 기계실 등	거창군 (민간위탁)
지상2층 (1,287.9m <sup>2</sup> )	공공산후조리원	모자동실(11), 다둥이실, 장애인산모실, 프로그램실, 영유아실, 사전관찰실, 음압실, 모유수유실, 피부관리실, 식당, 린넨실, 황토방 등	거창군 (민간위탁)
<b>연면적 2,101m<sup>2</sup>(공공산후조리원 1,745m<sup>2</sup> / 행복맘 센터 356m<sup>2</sup>)</b>			

## 다. 추진경과

- 1) 2022. 9. : 민선8기 도지사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
- 2) 2023. 5. ~ 8. :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공공산후조리원 등 부지조성 계획수립
- 3) 2023. 8.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사업부지 확정
- 4) 2023. 9. : 도시개발구역(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의결
- 5) 2024. 3. : 공공산후조리원 벤치마킹(경북 김천, 상주)
- 6) 2024. 6. : 지방소멸대응기금(기초기금) 투자계획 중점사업 수립  
※ 경남 북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중점사업 추진계획 수립
- 7) 2024. 9. : 공공산후조리원 등 건축기획용역 실시
- 8) 2024. 10. :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계획 수립(도 보육정책과)
- 9) 2024. 10.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자료 제출
- 10) 2024. 10. : 행정절차 이행 협의 완료(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11) 2024. 11. :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

## 라. 향후계획

- 1) 2025. 1.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 2) 2025. 3. ~ 5. : 설계공모 추진
- 3) 2025. 4. : 2025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 4) 2025. 6. : 실시설계
- 5) 2025. 10. ~ 12. : 공사 발주 및 계약

## 마. 기대효과

- 1)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생애 전 주기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산후조리 등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출산친화 환경 조성
- 2) 체계적인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 증가 기대

## 3.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 5. 사업비 내역 : [붙임2] 참조

## ②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 1. 제안이유

-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원정화장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화장시설 건립

### 2. 주요내용

#### 가. 사업 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
- 2) 위치 :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2. ~ 2026.
- 4) 사업량 : 부지규모 31,600㎡, 건물면적 2,910㎡(지하 1층, 지상 2층  
▶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조경시설 등
- 5) 사업비 : 23,300백만원(국 4,900, 도 1,000, 군 17,400)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 개요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형식)	면적				
취득(신축)	건물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건물 1동	2,910	11,676,000	2026	화장시설	거창군

### 2) 주요시설

구분	면적(㎡)	시설 계획안	비고
계	2,910.79		
지하1층	317.74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공용부	
지상1층	1,480.47	- 화장로, 화장로 전실, 고별실, 분골실 - 사무실, 접수실, 소장실, 문서고, 당직실 - 대차보관실, 중앙제어실, 공용부	
지상2층	1,112.58	- 유족대기실, 용품점, 매점, 카페테리아 - 화장로기계실, 창고, 공용부	

## 다. 추진경과

- 1) 2022. 9. :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종합 기본계획 수립
- 2) 2022. 12.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와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3) 2023. 1. : 거창군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구성
- 4) 2023. 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5) 2023. 7. ~ : 선진화장시설 벤치마킹, 주민설명회 등
- 6) 2024. 2.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
- 7) 2024. 5. :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선정
- 8) 2024. 6.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9) 2024. 8. : 기본계획 수립 완료
- 10) 2024.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공공건축심의 완료

## 라. 향후계획

- 1) 2025. 1. :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건축설계 용역 발주
- 2) 2025. 3. : 토지보상 매입 완료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3) 2025. 5. :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장사시설 결정 고시

- 4) 2025. 6. :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 5) 2025. 7. : 실시설계 완료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6) 2025. 8. : 공사 착공
- 7) 2026. 12. : 공사 준공

#### 마. 기대효과

- 1)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수요에 적극 대처
- 2) 친환경적인 화장시설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례비용 절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용 편의 제고

### 3. 관계법규 및 조례: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조감도 등 : [붙임1] 참조

### 5.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 ③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수도권 등에서 이전하는 은퇴자들의 거창군 정착을 위하여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에 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 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 2)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4. ~ 2027.
- 4) 사업량 : 개발면적 49,246㎡
  - ▶ 단독주택 용지 47필지 조성, 타운하우스 16세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건립
- 5) 사업비 : 29,738백만원(국 6,014, 기금 7,600, 도 751.8, 군 15,372.2)

##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 1) 개요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형식)	면적				
계				4,210				
취득(신축)	건물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	건물 16동	1,760	6,000,000	2027	지역활력타운 (타운하우스)	거창군
취득(신축)	건물		건물 1동	1,200	4,200,000		지역활력타운 (복합문화센터)	
취득(신축)	건물		건물 1동	1,250	4,800,000		지역활력타운 (국민체육센터)	

### 2) 주요시설

구분	면적(㎡)	시설 계획안	비고
계	4,210		
타운하우스	1,760	- 단독주택 16세대(세대당 110㎡)	
복합문화센터	1,200	- 다목적 교육장, 북카페, 구내식당, 셀프빨래방 - 웰니스시설(명상/요가), 동아리방 - 게스트하우스 5실	
국민체육센터	1,250	- 건강측정 및 운동처방실, 메디컬룸, 편의점 - 헬스장, 탁구장, GX룸 - 스크린골프장, 게이트볼장 및 대기공간	

## 다. 추진경과

- 1) 2023. 6. : 지역활력타운 사업공모 선정
- 2) 2023. 12. :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고시
- 3) 2024. 3. :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4) 2024. 6. : 토지보상 협의 실시
- 5) 2024. 9. : 토지이용계획(안) 확정
- 6) 2024. 12. : 부지조성 기본설계도서 작성

## 라. 향후계획

- 1) 2025. 1. : 사업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 2025. 5. : 타운하우스 매입약정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업체 모집 공고
- 3) 2025. 6. : 사업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 4) 2025. 7. : 주거거점 부지 조성공사 착공
- 5) 2025. 8. : 타운하우스 참여 민간업체 선정 및 매입약정
- 6) 2025. 10. : 복합문화센터 건립 착공, 단독주택용지 분양

- 7) 2026. 1. : 타운하우스 착공
- 8) 2026. 3. : 국민체육센터 건립 착공
- 9) 2026. 12. : 부지 조성공사 준공, 타운하우스 준공 및 매입
- 10) 2027. 1. : 타운하우스 분양, 임대 시행
- 11) 2027. 4. : 복합문화센터 건립 준공
- 12) 2027. 10. : 국민체육센터 건립 준공
- 13) 2027. 12. : 사업완료

#### 마. 기대효과

- 주거·문화·복지, 생활서비스 등이 복합된 주거거점 조성으로 지역활력 타운 유입인구의 정주여건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 3. 관계법규 및 조례: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조감도 등 : [붙임1] 참조

### 5.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 4 「가칭」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

### 1. 제안이유

- 가. 경남에서 영육아 인구수와 세자녀 이상의 가구수가 군부 1위로 건전한 육아의 정보 수집·제공의 컨트롤 타워 필요
- 나. 임신·출산 공공시설, 돌봄시설 조성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 돌봄·육아+출산 지원 등의 기능이 복합된 센터\* 건립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양육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율 증가
  - \* 영유아 관련 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
- 다. 저출산·고령화 농촌 지역의 인구 추세의 반전으로 **인구구조의 질적 전환 기반 강화**

라. **합계출산을 도내 1위를 넘어 전국적인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한 출산 이후 육아·돌봄 인프라 확충**

- 육아드림센터 건립을「거창형 의료복지타운」조성과 연계 추진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1) 사업명 : 「거창」육아드림센터 건립
- 2) 사업기간 : 2024. ~ 2027.3.
- 3) 사업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62-38(거창형 의료복지타운)
- 4) 사업내용 : 돌봄·육아+출산 지원 등의 복합 기능 센터 건립
- 5) 사업비 : 10,030백만원(공사비 10,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5년				2026년 이후	비고
		계	국	도	군		
10,030	30	2,000	-	1,000	1,000	8,000(군비)	

**나. 취득재산 내역**

사업명	토지소재지	신축규모	기준가격	비고
「거창」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	거창읍 대평리 1362-38	연면적 : 2,400㎡ (지상 3층)	10,000	신축

**다. 추진경과**

- 1) 육아드림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 2022. 12.
- 2) 육아드림센터 건립 추진사항 보고 ----- 2022.1.17.
- 3) 육아드림센터 건립관련 타지자체 운영 벤치마킹 ----- 2023. 3.
- 4)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전문가 초접점 면접조사 ----- 2023. 4.
- 5)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23. 5.
- 6)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 ----- 2023. 9.
- 7) 용역 결과물 검토 및 완료 ----- 2023. 10.
- 8) 경남도 사전협의(보육정책과) ----- 2024. 3.
- 9) 거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전략담당관) ---- 2024. 6.
- 10) 육아드림센터 건축기획 용역실시 ----- 2024.10.

## 라. 향후계획

- 1) 2025년 1차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자료 제출 ..... 2025.1.15.
- 2)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료 제출 ..... 2025. 1.
- 3) 2025년 1차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25. 3.
- 4) 건축기획 용역완료 ..... 2025. 4.
- 5)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 실시 ..... 2025. 5.
- 6) 거창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전략담당관) ... 2025. 6.
- 7)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인허가 절차추진 ..... 2025. 7.
- 8) 「육아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25. 10.
- 9) 건축 착공 및 공사 추진 ..... 2026. 1.
- 10) 운영 민간위탁동의(군의회) ..... 2026. 12.
- 11) 건축 공사 준공 ..... 2027. 1.
- 12) 운영 위탁자 공개모집 ..... 2027. 1.
- 13) 시설 개관 및 운영 ..... 2027. 3.

## 마. 기대효과

- 1)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 집적화로 지역 완결형 의료·복지시스템을 구축
- 2)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 3)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의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 3.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2] 참조

가. 「영유아보육법」제7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2조 및 제13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1] 참조

## 5. 시설개요 및 사업비 내역 : [붙임3] 참조

## 5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 1. 제안이유

-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보존 및 주민 생활 환경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현대화된 소각시설 건립

### 2. 주요내용

#### 가. 취득개요

- 1) 사업명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 2) 위치 : 거창읍 양평리 343번지
- 3) 사업기간 : 2022. ~ 2027.
- 4) 사업량 : 건물면적 1,706㎡, 연면적 3,489㎡(지하 1층, 지상 4층)
  - ▶ 소각시설 1식(48톤), 사무실, 중앙제어실, 주차장 등
- 5) 사업비 : 34,076백만원(국 10,223, 도 7,756, 군 16,097)

#### 나. 취득재산 내역

##### 1) 개요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형식)	연면적				
취득(신축)	건물	거창읍 양평리 343	건물 1동	3,489	34,076,000	2027	소각시설	거창군

##### 2) 주요시설

구분	연면적(㎡)	시설 계획안	비고
계	3,489		
지하1층	419.61	- 펌프실, 침출수처리시설	
지상1층	1429.94	- 폐기물반입장, 장비반출입실, 비상발전기실, 공기압축기실, 소석회저장실, 유인송풍기실, 소각로실, 바닥재반출실, 보일러급수실, 증기터빈실, 비산재반출실	
지상2층	568.17	- 전기실, 교반기점검실, TMS실, 송풍기실, 증기분배기실	
지상3층	571.76	- 홍보실, 휴게실, 화장실, 사무실, 서고, 다목적실, 파쇄기실, 증기분배기실	
지상4층	499.47	- 전자기기실, 중앙제어실, 샤워실, 탈의실, 다목적실, 창고, 크레인정비실, 악취처리실	

## 다. 추진경과

- 1) 2022. 9.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 2023. 6. : 기자재 등(소각로) 조달 구입계약 완료
- 3) 2023. 7.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 4) 2023. 8. : 설계적정성 계획단계 조달청 심사완료
- 5) 2023. 12. : 설계적정성 중간단계 조달청 심사완료
- 6) 2024. 2. : 군관리계획 결정심의 완료
- 7) 2024. 5. :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신청
- 8) 2024. 6. :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완료
- 9) 2024. 8. ~ : 총사업비 조정 및 재원협의(환경부, 기획재정부)

## 라. 향후계획

- 1) 2025. 2. : 1차 총사업비 조정 및 재원협의 완료
- 2) 2025. 3. : 설계적정성 실시단계 조달청 심사 신청
- 3) 2025. 4. :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완료
- 4) 2025. 5. : 2차 총사업비 조정 및 재원협의 신청
- 5) 2025. 6. : 공사 착공
- 6) 2027. 12. : 공사 준공

## 마. 기대효과

- 1)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로 환경보존 제고
- 2) 소각효율 향상으로 인한 매립시설 사용기한 연장

## 3.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 [붙임1] 참조

## 5.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 6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상면 문화누리 거점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증대 및 주민이용편의 제공 목적을 위해 사업부지 내 개인재산(취득), 건축물을(철거)후 신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2) 위치 :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3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4) 사업내용 :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2층) 연면적 A=562㎡
- 5) 사업비 : 4,000백만원 (균 2,800, 도 360, 군 840)

####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2)실집행액 (천원)	사업내용	시기
		소재지	면적(㎡)				
<b>총 계</b>				<b>2,553,809</b>	<b>3,137,616</b>		
취득	<b>소 계</b>		<b>711.62</b>	<b>2,422,199</b>	<b>2,492,586</b>		2025 ~ 2026
	토지	<b>농기계 수리센터</b> (주상면 도평리 715-1, 715-5, 713-4)	70.0	4,067	25,300	협의 취득 후 철거	
	건축물		79.62	1,532	50,686		
	건축물	<b>여성농업인센터</b>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	<b>562.0</b>	<b>2,416,600</b>	<b>2,416,600</b>	<b>신축</b>	
<b>소 계</b>		<b>946.85</b>	<b>131,610</b>	<b>645,030</b>			
처분	건축물	<b>여성농업인센터</b>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	579.95	49,875	541,440	철거	
		<b>창고</b> (주상면 도평리 711-3번지)	287.28	74,888	84,240	철거 후 사업부지 활용	
		<b>농기계 수리센터</b> (주상면 도평리 715-1, 715-5, 713-4)	79.62	6,847	19,350		

※ 1)기준가격 적용

- 1) 토지 : 공시지가, 2) 건물 : 시가표준액, 3) 신축 : 4,300천원/㎡
- 4) 철거 : 86천원/㎡(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실집행액

- 1) 취득·처분 : 가감평가, 2) 신축 : 4,300천원/㎡

### 다. 추진경과

- 1) 2022. 6. : 2023년 농촌협약 선정
- 2) 2023. 6. ~ 2024. 7. :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사업 착수설명회 및 주민위원회 협의 5회, 선진지 견학 1회 추진
- 3) 2024. 8. : 기본계획 승인·고시
- 4) 2024. 11. : 공공건축 사전검토(경남도)

### 라. 향후계획

- 1) 2025. 1. ~ 2.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 2025 1. : 설계공모 추진(3월 업체선정)
- 3) 2025 7. ~ 2026. 9. : 공사 착공 및 준공

### 마. 기대효과

- 1)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생활SOC 시설 복합 단지화 추진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이용성 확보
- 2)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

### 바. 담당부서 검토

시 설 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거창 여성농업인 센터 (713번지)	철거 · 신축	▶ 2020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진단결과, 건축물 안전 D등급에 따라 철거 후 거점시설 신축사업 추진 (행정) 결정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 반영	
창 고 (711-3번지)	철거	▶ 여성농업인센터 부속동(창고)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2020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진단결과, 건축물 안전 D등급에 따라 철거 후 거점시설 신축 사업 추진 (행정) 결정 ▶ 현 건물의 잔존가치(가감정결과) 84백만원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 반영	
농기구 수리센터 (715-1번지 등 3필지)	철거	▶ 센터 구성에 따른 진입환경 개선 및 부지 확장성을 고려한 도로변 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기존 건물 철거 후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 반영	

시 설 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농기구 수리센터 (715-1번지 등 3필지)	취득	▶ 센터 조성에 따른 진입환경 개선 및 부지 확장성을 고려한 도로변 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기존 건물 편입 및 철거 후 문화누리 거점센터 신축 반영	

### 3.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1] 참조

### 5. 사업계획도 및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 7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

### 1. 제안이유

- 거창군 청년구직 및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인구교육과)’와 주민자립운영조직 양성 및 농촌지역 부족한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창활력센터(행복농촌과)’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중인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의 사업부지 내 개인재산 편입,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여 농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5-1번지 일원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4) 사업내용 : 복합센터 신축(거창활력센터+청년창업지원센터), 6층연면적 A=1,940㎡

5) 사 업 비 : 15,750백만원 (청년(인구교육과) 6,750 + 농촌(행복농촌과) 9,000)

## 나. 취득 및 처분 재산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2)실집행액 (천원)	사업내용	시기
		소재지	면적(㎡)				
<b>총 계</b>				<b>9,791,105</b>	<b>12,519,780</b>		
취득	<b>소 계</b>		<b>4291.5</b>	<b>9,652,854</b>	<b>12,020,990</b>		
	건축물	거창읍 상림리	804.5	138,251	498,790	협의 취득	2025 ~ 2026
	토지	상림리 145-1	803.0	892,190	1,766,600		
	건축물	145-1	<b>1,940.0</b>	<b>8,342,000</b>	<b>8,342,000</b>	신축	
	토지	거창읍 상림리 137-4	145.0	54,650	275,500	협의 취득 (주차장 시설 활용)	
	토지	거창읍 상림리 131-3	599.0	225,763	1,138,100		
<b>소 계</b>			<b>804.5</b>	<b>138,251</b>	<b>498,790</b>		
처분	건축물	거창읍 상림리 145-1	804.5	138,251	498,790	철거	

※ 1)기준가격 적용

1) 토지 : 공시지가, 2) 건물 : 시가표준액, 3) 신축 : 4,300천원/㎡

2)실집행액 적용

1) 취득·처분: 가감정가 2) 신축 : 4,300천원/㎡

## 다. 추진경과

- 2023. 9. : 청년창업지원센터(인구교육과) + 농촌중심지(거창 활력센터) 복합화 계획 수립
- 2023. 9. ~ 2024. 2. : 기본계획(안) 수립
- 2024. 3. : 공공건축 사전검토(경남도 공공건축지원센터)
- 2024. 5. : 거창군 공공건축 심의
- 2024. 7. : 설계공모
- 2024. 9. ~ 2025. 4. : 실시설계 추진 중
- 2024. 12. : 농식품부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

## 라. 향후계획

- 2025. 1. ~ 2.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2025 1. ~ 7. :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 2025 7. ~ 2026. 9. : 공사 착공 및 준공

## 마. 기대효과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생활SOC 시설 복합 단지화 추진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이용성 확보
-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담당부서 검토(안)

재산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거창읍 상림리 145-1 (건축물, 토지)	취득·철거·신축	▶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현재 거창축협(법인) 소유 ⇒ 기존 건물 철거 후 복합화시설 신축 반영	
거창읍 상림리 137-4, 거창읍 상림리 131-3	취득	▶ 센터 구성에 따른 진입환경 개선 및 부지 확장성을 고려한 도로변 부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개인 사유지(주차장부지) 편입 후 센터 주차장 시설로 활용	

### 3.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 5.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 ⑧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1. 제안이유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관련 부족한 서비스 기능시설 조성 및 사회단체 및 공동체를 위한 주민 커뮤니티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부지 내 건축물을 신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업명 :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2) 위치 : 마리면 말흘리 247-2번지 일원
- 3)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 / 5년간
- 4) 사업내용 : 웰니스 문화자치센터 조성(2층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연면적 A=1,407㎡  
→ (복합화) 기초생활거점센터 743.7㎡ + 행정복지센터 663.3㎡
- 5) 사업비 : 7,500백만원(농식품부 승인 4,000, 군 추가(행정복지센터) 3,500)

## 나. 취득 재산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1)기준가격 (천원)	시기	사유	비고
		소재지	면적 (㎡)				
계				6,050			
취득	건축물	마리면 말흘리 274-4, 245, 220-1	1,407.0	6,050.0	2025 ~ 2026	웰니스 문화 자치센터 조성	신축

※ 1)기준가격 적용 : 신축(4,300천원/㎡)

## 다. 추진경과

- 1) 2018. 2. : 군수님 연두 순방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건립”건의
- 2) 2018. 9. ~ 2022. 4. :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완료  
- 3필지, A=7,395㎡ (부지매입비 454백만원)
- 3) 2020. 3. ~ 5. : “마리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등급 B
- 4) 2021. 8.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 용도지역 : 당초 > 농림지역 → 변경 > 계획관리지역 A=6,935㎡
- 5) 2023. 1. : 마리면 행정복합타운(행정복지센터+문화센터) 계획 수립
- 6) 2023. 4. : 농촌협약(마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체결
- 7) 2023. 6.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8) 2023. 11. : 거창군 공유재산심의  
⇒ 기존 면사무소(존치), 복지회관(철거), 창고(철거), 지역아동센터(철거)
- 9) 2023. 12. : 기존 마리면사무소 활용계획 검토(행정부속시설) - 부서 의견 수렴  
⇒ 부서 의견 : 1건 접수 - 거창군 가족센터(행복나눔과 여성보육담당 소관)
- 10) 2023. 12. : 기본계획(안) 수립, 경남도 사전협의
- 11) 2024. 2. ~ 6. : 경남도 광역계획지원단 협의
- 12) 2024. 8. :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13) 2024. 8. ~ 11. : 경남도 공공건축 사전검토

## 라. 향후계획

- 1) 2025. 1. :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공모(90일)
- 2) 2025. 3. :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시행계획 용역 착수
- 3) 2025. 7. : 시행계획(안) 협의(경남도) 및 승인·고시
- 4) 2025. 7. ~ 2027. 6. : 사업착공 및 준공
- 5) 2027. 6. 이후 : 기존 면사무소 → 거창군 가족센터 전환

마. 기대효과

- 1) 거점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거점 서비스 기능 강화
- 2) 문화복지체육휴게를 즐길 수 있는 중심 거점지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사. 담당부서 검토(안)

재산명	구분	담당부서 검토	비고
마리면 말흘리 274-4, 245, 220-1	신축	▶ 웰니스 문화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현재 거창군 소유로,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행정복합건물 조성하여 공동체 주민 커뮤니티 휴게 활동 공간 제공 ⇒ 복합화시설 신축 반영(공사비 6,050백만원)	

3. 관계법규 및 조례 : [붙임3] 참조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제16조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붙임1] 참조

5. 사업비내역 : [붙임2] 참조

**3. 검토의견**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공공산후 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 등 8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8건 모두 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1건당 1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므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면적 (㎡)	담당부서
취득 (신축)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	12,000	2,101	전략담당관
취득 (신축)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23,300	2,910	전략담당관
취득 (신축)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29,738	4,210	전략담당관
취득 (신축)	「가칭」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	10,030	2,400	행복나눔과
취득 (신축)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34,076	3,489	환 경 과
취득 (신축)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문화누리 거점센터 건립)	4,000	562	행복농촌과
취득 (신축)	청년창업 및 거창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	15,750	1,940	인구교육과 행복농촌과
취득 (신축)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7,500	1,407	행복농촌과

### 1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 건립사업은

-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복지타운 내 분만산부인과와 연계한 원스톱 임신·출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임.
-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78.1%가 선호할 정도로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전국 산후조리원 477곳 중 민간산후조리원은 전체 산후조리원의 97%(460곳)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3%(17곳)에 불과해 공공성이 약한 실정임.
-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데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116곳)과 경기도(147곳)에 집중돼 있고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98개 지자체에(49%)에는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는데 우리군 역시 이에 해당함.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 원정 산후조리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군 산모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됨.

###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22.12월 기준, 단위: 명, 만원)

지역	지역내 민간산후 조리원 유무	산후 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규모	1일 평균 영유아 수(명)	종사자 수(명)	이용 요금 (2주, 일반실)	입소율 (%)
서울 송파구	유	송파산모 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14.2.	위탁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지상3~5층, 산모실 27개	15	34	190	68
울산 북구	유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21.7.	위탁 (세나요양병원)	지하 1층 ~지상3층 산모실 28개	18.3	29	189	65.7
경기 여주시	무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9.5.	위탁 (경기도의료원)	지상 2층 산모실 13개	11	18	168	99
강원 삼척시	무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16.2.	직영 (강원도 삼척의료원)	삼척의료원 별관 3~5층, 산모실 13개	7	11	180	46.1
강원 철원군	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20.2.	위탁 (철원병원)	지상 1~2층 산모실 10개	8.5	17	179	85
강원 화천군	무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	'22.2.	위탁 (주)미래 산후조리원)	지상 2~3층 산모실 5개	4.23	14	180	84.6
강원 양구군	무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20.6.	위탁 (성심의료재단)	지상 1~2층 산모실 8개	5.6	16	180	70
충남 홍성군	무	홍성의료원 부설산후조리원	'13.4. (22.2.)	직영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지상 1층 산모실 8개	4.3	11	182	47

지역	지역내 민간산후 조리원 유무	산후 조리원명	개소일	운영형태	시설규모	1일 평균 영유아 수(명)	종사자 수(명)	이용 요금 (2주, 일반실)	입소율 (%)
전남 해남군	무	전남1호 공공산후조리원	'15.9.	위탁 (해남병원)	해남병원 內 4층, 산모실 10개	6	11	154	60
전남 강진군	무	전남2호 공공산후조리원	'18.5.	위탁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內 1층 산모실 10개	5	11	154	50
전남 완도군	무	전남3호 공공산후조리원	'19.6.	위탁 (완도대성병원)	완도대성병원 內 2층 산모실 10개	4.2	11	154	42
전남 나주시	무	전남4호 공공산후조리원	'20.12.	위탁 (빛가람 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 內 2층 산모실 10개	12	14	154	67
전남 순천시	유	전남5호 공공산후조리원	'22.3.	위탁 (현대여성 아동병원)	지상 4층 산모실 5개	4.3	5	154	93
경북 울진군	무	울진군 공공산후조리원	'20.11.	위탁 (울진군 의료원)	지상 1층 산모실 8개	10	9	182	45
경북 김천시	무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22.10.	위탁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지상 2층 산모실 12개	6	17	168	42
경남 밀양시	무	밀양 공공산후조리원	'22.5	위탁 (밀양제일병원)	지상 1층 산모실 8개	3.9	13	160	48.8
제주 서귀포시	유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13.3.	위탁 (서귀포의료원)	지상 1층 산모실 14개	7	16	154	60

## ②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사업은

- 경남도 내 화장시설은 10곳이며, 그중 8곳이 거창군에서 100km이상 떨어져 있으며, 이동시간은 10곳 모두 1시간 10분 넘게 소요됨.

### <경남도내 화장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거 리	소 요 시 간
1	창원시립마산화장장	136km	1시간 35분
2	진주시안락공원	88km	1시간 11분
3	통영시추모공원	135km	1시간 25분
4	사천시누리원	109km	1시간 19분
5	밀양시공설화장시설	113km	1시간 26분
6	고성군공설화장장	113km	1시간 22분
7	김해추모의공원	135km	1시간 53분
8	남해추모누리영화원	147km	1시간 44분
9	창원시립상복공원	130km	1시간 43분
10	함안하늘공원	96km	1시간 31분

- 또한, 보건복지부,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중 ‘전국 화장시설 지도’에 따르면 거창군과 경계하고 있는 함양, 합천, 산청, 무주, 장수군 역시 관외 화장을 해야 하는 지역으로 구분된 것으로 보아 향후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도 화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국 화장시설 지도>**



- 화장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국민들은 원정 화장으로 시간과 비용을 적게는 2배, 많게는 3~4배로 지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화장문화 정착, 지역 간 이용료 편차, 화장장 접근성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화장 시설 건립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거창군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 7개 부처(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를 복합 지원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 주거단지에 입주하는 귀향·귀촌인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임

- 우리군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단독주택 16세대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와 복합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2023년 선정: 경남 거창군, 강원 인제군, 충북 괴산군,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 경북 청도군

- 우리 군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것은 고무적인 결과이며 은퇴자들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으로 약간의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의 증가,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노후 주택의 공실률 증가 등을 고려한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해 보임.

#### 4 「가칭」거창군 육아드림센터 건립사업은

-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연계한 임신·출산·육아 인프라 집적화로 지역 완결형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돌봄과 육아, 출산 지원 등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을 만들고자 함.**
-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육아 기반 시설의 수요가 매우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실정에 이와 같은 공공형 육아드림센터 건립은 출산과 육아에 있어 안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⑤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은

-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2023년) 도래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 규모는 지하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3,489㎡ 정도이며,
  - 일일 시설용량은 48톤, 사무실, 중앙제어실, 주차장 등이 포함됨.
- 2월 중 1차 총사업비 조정 및 재원 협의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완료 등 행정절차 후 6월에 착공할 예정임.
- 해당 소각시설 신설을 통해 폐기물을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처리로 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소각 효율 및 매립시설 사용기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⑥ 주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 본 조성사업은 2023년 농촌협약 선정 사업으로 주민위원회 협의와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주상면 도평리 713번지 소재 여성농업인센터, 도평리 711-3번지 창고, 도평리 715-1, 715-5, 713-4번지에 소재한 농기계수리센터를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주상면 문화누리 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문화누리 거점센터 내에는 마을카페, 공유주방, 체력단련실, 다목적멀티룸으로 구성할 예정임.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란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복지 등 서비스 공급 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점을 기반으로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기능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주민 전체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 노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쾌적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

#### 7 청년창업 및 거창 활력 복합센터 건립공사는

- 거창읍 상림리 145-1번지(구 하나로마트)에 6층(연면적1,940m<sup>2</sup>)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거창활력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
- 공간 구성은 운영지원사무실, 주민여가학습실, 가족어울림극장, 공유부엌, 창업지원오피스 등 교육·돌봄·문화·여가·창업지원의 종합 인프라로 이루어짐.
- 거창읍 상림리 145-1번지(구.하나로마트)의 토지와 건물은 제273회 임시회 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받은 사항이며, 이번에 승인할 사항은
  - 건축물 신축(1,940m<sup>2</sup> / 8,342백만원)과
  - 주차장 용지 매입(744m<sup>2</sup> / 1,413백만원)임.
- 2023년 9월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제도가 법제화된 후 처음으로 거창군이 국무조정실 주관 청년친화도

시로 선정(2025.2.11.)되어 농촌형 청년친화도시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음.

- 농촌지역 군 단위, 인구감소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그 의의와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임.
- 청년이 주도적으로 농촌 활력을 이끌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심점이 될 하드웨어적 기반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해 보임.

#### **8** 마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 농식품부 소관 농촌협약사업으로 마리면 말흘리 274-4번지 일원에 2층 규모의 복합화시설(1,407㎡ / 7,500백만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지역아동센터, 민원실, 북카페, 마을사랑방,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하여 문화·복지·체육·휴게의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추가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 시설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배후 마을 주민들도 중심지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통, 시설,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역 내 자원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 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